



##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

[시행 2023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24호, 2023. 1. 1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), 044-202-7374

### I.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"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"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| 구 분       |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명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급여기초임금일액  |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<b>80,000원 이하</b> 일 것 | 필요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재 산 합 계 액 |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·건물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<b>160,000원 이하</b> 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·건물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<b>2억 이하</b> 일 것<br>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(필수)<br>②전·월세계약서 (전월세입구의 경우)<br>③무료임대확인서 (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) |

#### ※ 참고사항

1.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,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.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.
2. 주택·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"과세내역 없음"으로 발급받아야 함.

### II. 행정사항

#### 1. 시행일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2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